# 서 면 답 변 서

| 소 속 | 평 창 군 의 회 | 질문위원 | ( 지광천 ) 위원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답 변 자 | 평 창 군 수<br>(기획실장) | 일 자 | 질의 | 2021년 9월 13일 |
| | | | 답변 | 2021년 9월 14일 |
| 회 의 |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( 1 )차 **예산결산특별위원회** | | | |

## <u>질문요지</u>

○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위·수탁 계약서 세부자료(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(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) 기준

## <u>답변내용</u>

○ 평창군·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물 위·수탁계약서 내용

제8조(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) ① **<u>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, “을”이 집행할 수 있는 공사비는 10,000천원 이하로 한다. 다만, 10,000천원 초과하는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라 할지라도 “갑”과 “을”의 협의에 따라 “을”이 시행할 수 있다.</u>**

1. 시설물의 훼손 및 노후 등으로 인한 보수와 유지관리 업무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시행한다.

2. 각종 정책사업이나 재난 또는 시설물의 재산상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“갑”의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되 사전에 “을”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3. 매년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 등의 구매는 “을”이 시행한다.